

원자력검사원증의 의미와 법적 근거

2019. 5.

형상철

KINAC/KINS의 수탁업무 처리 규정

➤ KINAC 수탁업무처리규정- 계량관리검사 업무처리 세부규정

제5조(취급자의 자격) **검사업무 취급자의 자격은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훈령 “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”에 따른 해당 분야의 검사원증을 취득, 소지한자로 한다.** 단, 임시검사원증을 소지한 검사원보 또는 검사원증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원장이 인사조치한 자의 경우는 검사원증 소지자의 감독 하에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검사원증) ① **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검사원증을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**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증은 위원회에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➤ KINS 수탁업무처리규정-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정기검사 업무처리 세부규정

제2조(정의) 5. **“검사원”이란 “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”… 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**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안전기술원의 검사요원을 말한다.

제5조(검사원증) ① **검사원은 원자력안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8조 제7항에 따라 검사원증을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**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증은 위원회에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.

검사원증의 법적 근거는?

검사원증을 제시하는 의미는?

증표제시에 관한 법령

➤ 원자력안전법

제98조(보고·검사 등)
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**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** 그 사업소·공장·선박·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**출입**하여 장부·서류·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**검사**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**질문**하게 할 수 있으며,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**시료를 수거**하게 할 수 있다.
- ④ 국제약속에 따라 **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** 또는 국제규제물자공급 당사국 정부가 지정하는 자는 **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**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사업소·공장·선박·연구시설 및 부지 등에 **출입**하여 장부·서류·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**검사**하고, 관계인에게 **질문**하거나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**시료를 수거**할 수 있다.
- ⑤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의 감독하에 국제약속으로 정한 범위에서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**감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**하거나 **봉인**을 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규제물자의 **이동을 확인**하거나 **정보를 관리**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⑦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·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**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**

증표제시에 관한 법령

➤ 방사능방재법

제44조(보고·검사 등)

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, 서류, 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**검사**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**질문**하게 할 수 있으며, 검사를 위한 최소량의 **시료(試料)**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 및 방사능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3.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④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**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**

증표제시에 관한 법령

원자력안전법 제98조 검사,
방사능방재법 제44조 검사
=?

KINAC의 계량관리검사, 방호검사
KINS의 안전검사

검사원증의 법적 근거

제16조	제98조
<p>제16조(검사) ① 발전용원자로 설치자,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,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98조(보고·검사 등)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·공장·선박·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·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,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·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/p>

검사원증의 법적 근거

원자력검사관증 및 원자력검사원증 관리규정

[시행 2014. 4. 23.] [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47호, 2014. 4. 23., 일부개정]



원자력안전위원회(원자력안전과) 02-397-728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원자력안전법」 제98조제7항,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」 제44조 제4항 및 「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」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검사를 수행하는 자의 증포에 대한 규격,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소속 직원증 「원자력안전법」, 「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」(이하 "방호방재법"이라 한다) 및 「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」(이하 "생방법"이라 한다)에서 규정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(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포를 "원자력검사관증"이라 한다) 및 「원자력안전법」 제111조, 「방호방재법」 제45조 및 「생방법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의 직원증 등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(이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포를 "원자력검사원증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➤ 원자력안전법

제111조(권한의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, 통제기술원, 안전재단,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4. 제16조제1항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2조제1항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8조제3항 후단·제6항(제34조 및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37조제1항, 제47조제1항, 제56조제1항 본문, 제61조제1항 본문, 제65조제1항, 제75조제1항, 제77조제1항 본문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**검사 및 확인·점검**

15. 그 밖에 **대통령령**으로 정하는 업무

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

제154조(위탁할 수 있는 업무) ①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8.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(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)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 운반물 현황 보고에 관한 업무

9. **법 제98조제2항** 및 제4항에 따른 **검사 및 시료 수거**에 관한 업무

10.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**장치의 설치**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7 KINS 위탁업무

4.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및 확인·점검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
가. 법 제16조제1항(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관한 **검사**

나. 법 제22조제1항(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관한 **검사**

12.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
사. **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.**

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9 KINAC 위탁업무

2. 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설치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**검사**

나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**검사**

6. 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
가. 법 제98조제2항(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이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및 제4항에 따른 **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 지원**

나.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

※ **민간위탁**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,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**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**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(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)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➤ 원자력안전법

제11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3. 제16조제1항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22조제1항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37조제1항·제47조제1항·제56조제1항·제65조제1항·제75조제1항·제77조제1항 또는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받아야 할 사항을 검사받지 아니하거나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자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➤ 방사능방재법

제40조(업무의 위탁)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위협의 평가
2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
3.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 업무
4.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

5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

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20조제1항(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및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승인에 관련된 심사
2.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
3.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훈련 평가 지원(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
4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(방사선비상진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➤ 방사능방재법

제4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9조제1항 본문,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
2. 제11조, 제21조제1항제1호, 제37조제4항 전단·제5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3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

제12조(검사 등)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38조(검사)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.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**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**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**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**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➤ 행정규제 기본법

제2조(정의)

1. **“행정규제“**(이하 “규제 ” 라 한다)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**국민(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등이나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**을 말한다.

원안법 제98조, 방사능방재법 제44조 검사는 행정규제 O

계량관리 검사, 원자로 및 관계시설 검사는 행정규제 X
=> 출입, 질문, 시료수거 X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➤ 행정조사기본법

제9조(출석·진술 요구)

제10조(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)

제11조(현장조사) ① 조사원이 가택·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12조(시료채취)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➤ 국세징수법

제25조(신분증의 제시)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,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**신분을 표시하는 증표**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➤ 식품위생법

제22조(출입, 검사, 수거등)

③ ... 출입, 검사, 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**권한을 표시하는 증표**...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

➤ 경찰관직무집행법

제3조(불심검문)

④ 경찰관은 ...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**신분을 표시하는 증표**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,...

시행령 제5조(신분을 표시하는 증표)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7조 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.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➤ 소방기본법

제30조(출입·조사 등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
➤ 공직선거법

제272조의2(선거범죄의 조사등)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·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·조사·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- 헌법 제37조 제2항
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**법률로써 제한**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
- **권력적 행정조사**는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**법률의 근거를 요함**
- 국민은 관계 법령에 의거, 작위의무, 수인의무를 부담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조사절차상 행정조사를 행하는 **공무원이 조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**

검사원증의 법적 근거

제16조	제98조
<p>제16조(검사) ① 발전용원자로 설치자,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,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98조(보고·검사 등)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,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·공장·선박·연구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·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,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하거나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·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/p>

검사원증 제시의 의미

제16조	원안법 제98조, 방재법 제44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• 증표를 제시할 필요 없음 •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권력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침 •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시해야 함 • 검사를 거부, 방해, 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처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➤ 제16조의 검사를 하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됨 ➤ 수탁기관이 원안법 제98조, 방재법 제44조에 근거해서 검사를 수행해서는 안됨 	

감사합니다.